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도장애 이상의 환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차량(환자증명서 제시) : 면제

제15조 제1호중 “300미터”를 “150미터”로 하고, “60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등) ④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법 제19조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19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 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설계변경)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로서 허가 당시의 규모 이하로 축소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허가당시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다만, 문화및집회시설 중 음식점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80㎡당 1대로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시설면적 130㎡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7세대(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5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5.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50㎡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대비표

시 설 물	설 치 기 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2.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과 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80㎡당 1대로 한다.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시 설 물	설 치 기 준		
	현 형	개 정 안	수 정 안
4.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시설면적 <u>180㎡</u>초과 <u>250㎡</u>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u>250㎡</u>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u>250㎡</u>초과하는 <u>130㎡</u>당 1대를 더한 대수 < 신 설 >	---<u>130㎡</u>--- <u>200㎡</u>---- ----- ----- <u>200㎡</u>----- ----- <u>200㎡</u>----- <u>130㎡</u>당 ----- 다만, 7세대(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4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안과 같음) 다만, 7세대(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5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50㎡당 1대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수 정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주 정 안
제4조의2(주차요금 감면) (생략) 1. ~ 6. (생략) <u><신 설></u>	제4조의2(주차요금 감면)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u>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도장애이상의 환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차량(환자증 명서 제시) : 면제</u>	제4조의2(주차요금 감면) (개정안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생략) 1.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u>300미터</u>이내 또는 도보거리 <u>600미터</u>이내 2. (생략) <u><신 설></u>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현행과 같음) 1. <u>150미터</u>. <u>300미터</u> 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등) ①<u>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u>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의2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등) ①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추정안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주장안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19조의1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2를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 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현행	개정안	추정안
부칙 <u><신설></u>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 허가된 건축물로서 허가 당시의 규모이하로 축소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허가당시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u>